

의안번호	제 231호
의결 연월일	2011년 10월 일 (제 304 회)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10월 1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10월 10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정책연구용역 심의·관리 적용범위 확대 (안 제3조)
  - 건당 5천만원이상 → 금액불문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
- 위원회 운영 중 회의소집 통지 기간 단축 (안 제7조)
  - 회의소집 통지일 15일전 → 7일전으로 단축
- 용역실명제 명문화 (안 제9조)
  - 용역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용역실명제 운영
-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)
  - 용역담당관 →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으로 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외의 본문 중 “건당 5천만원 이상의”를 “모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“천재지변”앞에 “그 밖에”를 삽입하고, 후단 (POOL 용역비)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

제7조제4항 중 “15일”을 “7일”로 한다

제9조의 제목 “용역담당관”을 “용역실명제”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

제9조의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용역담당관”을 “용역 실명 대상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, 제12조제1항,제2항, 제13조제2항, 제14조 제목외의 본문 중 “용역담당관”을 “용역 실명 대상공무원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<b>건당 5천만원 이상</b>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. 다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 <p>2. <b>천재지변 복구</b>,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(<b>POOL 용역비</b>)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<b>모든</b>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b>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</b></p> <p>3. <b>그 밖에</b> 천재지변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</p>
<p>제7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<b>15일</b> 전에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7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<b>7일</b> 전에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용역담당관)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별로 용역담당관을 두며, 용역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용역담당관은 ----- ----- 1.~ 4. (생 략)</p>	<p>제9조(용역실명제)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관련 실·국장, 과장·담당관, 팀장, 담당주무관으로 한다.</p> <p>③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----- ----- 1.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 ① (생 략) ② 용역담당관은----- -----</p>	<p>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----- -----</p>
<p>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용역담당관은----- ② 용역담당관은----- -----</p>	<p>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용역실명 대상공무원은----- ②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----- -----</p>
<p>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(생 략) ② 용역담당관은----- -----</p>	<p>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----- -----</p>
<p>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) 용역담당관은----- -----</p>	<p>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)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----- -----</p>